

□ 주민세 체계

- (과세체계) 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

세목 구분	납세의무자	세율체계
개인분	주소를 둔 개인	1만원 범위 내
사업소분	사업소를 둔 사업주	(기본세율) 5만원~20만원 + (연면적) 250원/m ²
종업원분	사업소를 둔 사업주	월 지급 급여액의 0.5%

- (세수 귀속) 특·광역시세 및 시·군세

※ 광역시의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

□ 주민세 종업원분

- (납세의무자) 종업원*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

*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, 그 밖의 종사자

- (납세지)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부과

- (과세표준 · 세율)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*의 0.5%

* 「소득세법」 §20①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

- (비과세) 「소득세법」 상 비과세 대상 급여, 출산전후휴가·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,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복귀 후 1년 간의 급여는 제외

- (면세점)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“1억 8,000만원” 이하인 경우

- (중소기업 고용지원)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50명을 초과한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 급여액 과표 공제

- (징수방법) 급여지급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(폐업 시 폐업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)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로 신고납부

- (납기) 다음달 10일까지